

1/ 시대의 상징으로서 근현대 일본의 연호와 시호*

박완



근대 일본 최초의 천황 시호(후호가) '메이지'(明治)로 확정되었음을 보도하는 신문 기사. 역사상 천황 생전의 연호를 시호로 사용한 첫 사례이자, 천황은 재위 중에 하나의 연호만 사용한다는 '일제일원제'와 그 연호를 사후에 시호로 사용한다는 '일원일호제'가 결합한 순간이다.

출처: 『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 1912년 8월 27일, 2면 4단.

박완(朴完) 고려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도쿄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 주제는 육군을 중심으로 한 근대 일본의 정치·군사사이다. 주요 연구 성과로는 『교류와 전쟁으로 본 일본사』(공저, 경인문화사, 2023), 『근대 일본인의 국가인식』(공저, 빈서재, 2023), 『제1차 세계대전 전후 일본 육군의 재외무관 파견과 정보 수집』(『史叢』 제109호, 2023. 5.) 등이 있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 S1A6A3A02102886).

<https://doi.org/10.29154/ILBI.2024.30.14>

1. 들어가며

오늘날 일본에서 시대를 구분하고 기억하는 상징 중 하나는 바로 천황제에 수반된 연호(年號)와 시호(諡號)다. 장기간에 걸쳐 재위한 천황이 노쇠하여 건강이 악화하면 그의 건강 상태를 미디어가 앞다투어 보도하고, 또 신문 기사나 평론, TV 좌담회 등에서는 그가 남긴 업적과 그가 재위한 시대를 회고한다. 한편으로 신 천황 즉위와 동시에 발표될 새 연호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천황이 사망하면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자숙’(自肅) 분위기가 확산함과 동시에 신 천황의 즉위와 새 연호의 발표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그 뒤를 잇고, 정부의 공문서에서 민간의 달력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인쇄물에서 일제히 새로운 연호가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선행이 사용한 연호를 신 천황이 시호로 올림으로써, 생전에 일본 국내에서는 실명이 아닌 단지 ‘천황 폐하’나 ‘금상(今上) 천황’ 등으로 불렸던 인물은 비로소 국민들에게 널리 기억되고 불리게 될 ‘이름’을 지니게 된다.

이처럼 일본에서 국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집권당 내 권력관계 변화 등을 계기로 이루어지는 내각 교체와는 달리, 수십 년에 한 번꼴로 이루어지는 천황의 교대와 이에 따른 연호의 교체는 바로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감각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옛 연호는 그것을 사용한 천황의 시호가 됨으로써 그가 재위한 시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널리 기억되는 것이다.¹

다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에서 연호 및 시호와 관련된 이러한 제

1 일찍이 스즈키 마사유키(鈴木正幸)는 연호 사용이나 천황의 출생·사망일에서 유래한 공휴일 등을 들면서, ‘시간의 지배자’로서의 천황의 성격에서 전전과 전후의 연속성을 지적했다(스즈키 마사유키, 류교열 옮김, 『근대 일본의 천황제』, 이산, 1998, 16~17쪽). 이에 반해 스즈키 히로히토(鈴木洋仁)는 각각의 연호가 상징하는 시대의 이미지는 시기와 맥락에 따라 변화하고, 연호보다 전후(戰後)와 서기(西紀)라는 시간 구분법이 더 유력해지고 있으며, 현재 일본사회에서 ‘천황=연호=시대 이미지’의 일체성은 해체되고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기했다(鈴木洋仁, 『「元号」と戦後日本』, 青土社, 2017, 제1장; 鈴木洋仁, 『「天皇=元号=時代」の崩壊 時代語るの意味問い直しを』, 『Journalism』 347号, 2019). 하지만 그도 연호는 “역사 의식에서 시대 구분의 인덱스”라고 정의했다(鈴木洋仁, 『「元号」と戦後日本』, 9쪽). 그리고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도 근대 연호와 시호를 둘러싼 언설이나 시대 인식론이 아니라, 바로 제도로서의 연호와 시호 그 자체다.

도와 관행은 근대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전통이다. 즉 천황은 재위하는 동안에는 연호를 교체하지 않아야 하고, 해당 연호를 사용하는 기간은 천황의 육체적 죽음을 통해서만 비로소 끝나며, 생전에 사용한 연호를 사후에 천황의 시호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세일원제(一世一元制)와 생전 퇴위 금지, 그리고 시호에 관한 새로운 관행은 모두 근대 천황제에서 일정한 정치적 목적하에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섭정 설치, 패전과 민주화, 생전퇴위 및 상황(上皇) 호칭 부활 등 몇 차례의 고비를 겪었음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근현대 일본에서 시대의 상징으로서 연호 및 시호 관련 제도와 관행이 성립하고 일정한 변용을 거치면서도 오늘날까지 ‘생존’한 과정을 고찰하는 것이 본고의 첫 번째 과제다.

한편 근대 이후 천황 중심의 국민 국가가 형성되는 가운데, 천황의 교대에 따른 개원(改元)과 시호 결정은 국민들에게 보다 직접적인 문제가 되었다. 국민들은 새로운 제도와 관행의 출현에 어떻게 반응했고, 자신들이 살아왔으며 앞으로 기억할 시대의 상징으로서 연호와 시호 결정 과정에 어떻게 관여하고자 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본고의 두 번째 과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첫째, 근현대 천황제에서 연호뿐만 아니라 시호까지 포함하여 그 제정 주체 및 절차, 공표 방식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와 관행의 성립 과정을 제시하겠다. 둘째, 연호와 시호에 관한 새로운 전통이 출현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과 그 과정에의 참여 욕구를 당시 신문 보도를 통해 추적하겠다. 셋째, 패전과 민주화가 초래한 위기와 국민 참여 문제를 포함한 논의, 그리고 이를 거쳐 연호와 시호가 새로운 제도로 변용하여 오늘날에 이르는 과정을 국회 의사록을 통해 분석하겠다. 이를 통해 천황제에 수반된 제도로서의 연호와 시호가 일본 국민들이 시대를 기억하는 장치로 작동함과 동시에, 역으로 천황제의 생존에도 기여한 측면을 밝히고자 한다.

2. 근대 연호 및 시호 관련 제도의 성립

우선 본고에서 사용하는 연호와 원호(元號), 시호와 추호(追號)의 의미를 간단히 정리하겠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원호는 고대 중국에서 천자나 제후가 즉위한 해를 원년으로 하여 ‘…제(帝) …년’ 식으로 햇수를 헤아리는 방법이다. 이에 반해 연호는전한(前漢) 무제(武帝) 시기에 ‘건원’(建元)이라는 연호를 제정하면서 처음 도입된 것으로, 새로운 황제의 즉위나 상서(祥瑞)·재이(災異) 등을 계기로 새롭게 원년을 정할 때 주로 한자 두 글자로 그 앞에 붙이는 호칭이다. 그리고 중국의 영향을 받아 고대 일본에서 제정된 율령에서도 이를 연호라고 칭했지만, 근대 이후 각종 포고나 법령에서 ‘일세일원’, ‘원호’, ‘개원’ 등의 용어가 사용되면서 원호라는 호칭이 널리 보급되어 있다.²

다음으로 시호는 군주가 생전에 이룬 업적을 현창하기 위해 사후에 올리는 호칭이다. 일본에는 자국 고유의 국풍(國風)과 중국식의 한풍(漢風) 시호가 존재했지만,³ 9세기 말부터는 잘 쓰이지 않게 되었다. 그 대신 재위 중의 공궐 혹은 퇴위 후의 거쳐, 사찰, 능묘 등의 명칭 혹은 그 앞에 ‘후(後)’자를 덧붙인 보다 간편한 호칭인 추호가 널리 쓰이게 되었다고 한다.⁴ 그 외에 일종의 별칭으로 천황이 생전에 사용한 연호 뒤에 ‘제’(帝) 등을 붙인 호칭이 사용된 사례도 있다.

이러한 구분법에 따르면 근대 이후의 ‘메이지’(明治), ‘다이쇼’(大正) 등은

2 所功, 『元号の歴史 増補版』, 雄山閣出版, 1993, 248~249쪽.

3 국풍 시호는 예를 들어 지토 천황(持統天皇)의 ‘오야마토네코야메노히로노히메미코토’(大倭根子天之廣野日女尊)와 같이 야마토코토바(大和言葉)를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헤이안(平安) 시대 초기인 닌묘 천황(仁明天皇) 시기까지 사용되었다. 이에 반해 한풍 시호는 ‘천황’ 앞에 한자 두 글자로 표기한 것으로, 8세기 후반에 진무 천황(神武天皇)부터 겐쇼 천황(元正天皇)까지 역대 천황에게 일괄 추증된 뒤 9세기 말의 고고 천황(光孝天皇) 시기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이후 가마쿠라(鎌倉) 시대 초기까지 드문드문 사용되다가 단절된 뒤, 에도(江戸) 시대 말기의 고카쿠 천황(光格天皇)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부활했다고 한다(野村朋弘, 『諡: 天皇の呼び名』, 中央公論新社, 2019, 64~70쪽).

4 국풍 시호는 대왕의 사후 왕권이 일시적으로 신하들에게 위임되었을 때 신하들이 대왕의 업적을 평가하여 올린 것, 한풍 시호는 왕권이 천황가에 귀속된 뒤 신 천황이 선황에게 올린 것, 추호는 천황 위 계승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선황의 업적을 현창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선황의 거쳐 등을 따서 올린 것이라고 한다(野村朋弘, 『諡: 天皇の呼び名』, 71~72쪽).

연호, ‘메이지 천황’(明治天皇), ‘다이쇼 천황’(大正天皇) 등은 추호에 해당한다. 다만 본고에서는 보다 일반적인 표현인 ‘연호’와 ‘시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의식의 명칭 혹은 사료 내 표현 등에 대해서는 ‘원호’와 ‘추호’도 적절히 병용하고자 한다.

전근대 일본 연호의 특징은 천황의 교대뿐만 아니라 상서·재이의 출현, 불길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갑자(甲子)·신유(辛酉)년 등을 계기로 잦은 개원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36대 고토쿠 천황(孝德天皇)이 645년에 다이카(大化)를 일본 최초의 공식적인 연호로 선포한 이래, 121대 고메이 천황(孝明天皇)이 1865년에 게이오(慶應)로 개원할 때까지 총 243개의 연호가 존재했다. 남북조(南北朝)를 포함하여 천황 1대당 평균 2.8개의 연호를 사용했고, 연호 1개를 기준으로 하면 약 5년간 사용된 것이 된다.⁵

다만 선행연구에서 지적하듯이, 에도 시대 후기가 되면 민간 학자들 사이에서 일세일원제에 관한 주장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즉 오사카(大阪) 출신의 유학자이자 가이토쿠도(懷德堂) 학주(學主)인 나카이 지쿠잔(中井竹山), 미토(水戸) 출신의 유학자이자 쇼코칸(彰考館) 총재인 후지타 유코쿠(藤田幽谷)는 둘 다 1791년에 저술한 글에서, 상서나 재이 등을 이유로 하는 개원은 무의미하고 잦은 개원으로 연호에 사용할 글자가 부족하기에 명(明)·청(淸)을 모범으로 한 일세일원제 도입을 주장한 것이다. 특히 후자의 주장은 훗날 그의 제자를 통해 조슈번(長州藩)에 전달되어 메이지 신정부 측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⁶

다음으로 전근대의 개원 절차를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우선 대대로 문장박사(文章博士) 등의 관직을 맡은 스가와라(菅原)·오에(大江)·후지와라(藤原)씨 등이 중국 고전을 참조하여 복수의 후보를 상신[감신(勘申)]한다. 그러면 이에 대해 조정의 공경회의(公卿會議)에서 심의[난진(難陳)]가 이루어진 뒤, 그 결과를 천황이 승인하여 칙정(勅定)함으로써 개원이 이루어진

5 所功 編著, 『日本年号史大事典[普及版]』, 雄山閣, 2017, 부표4, 744~754쪽에서 필자가 계산했다.

6 所功, 『元号の歴史 増補版』, 179~183쪽.

다. 시대에 따라서는 섭정이나 상황 혹은 막부가 중간 과정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천황이 연호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개원 조서(詔書)에 날짜를 기입하는 “칙정의 원칙”은 관철되었다고 한다.⁷

그리고 시호 결정 과정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고메이 천황의 사례를 보면, 1866년 12월 말에 천황이 사망한 뒤 전 곤추나곤(權中納言) 하치조 다카사치(八條隆祐) 등이 시호 후보 상신[감진(勘進)]을 명받았다. 그리고 이들이 올린 복수의 후보에 관하여 공경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효경』(孝經)에서 유래한 ‘고메이’(孝明)로 최종 결정되었다. 그리하여 이듬해 2월 16일에 신 천황이 선황의 능에 칙사를 파견하여 시호를 아뢴[봉고(奉告)]과 동시에 조서를 통해 이를 전국에 공포한 것이다.⁸

그렇다면 이러한 연호 및 시호와 관련된 종래의 관행은 근대 이후 어떻게 변화했고 또 제도화되었는지 검토해볼 것이다. 무쓰히토 친왕(睦仁親王, 훗날의 메이지 천황)은 선대인 고메이 천황이 사망한 지 2주가 지난 1867년 1월 9일에 천황위를 계승[천조(踐祚)]했다. 하지만 종래에는 정식 즉위례(即位禮) 및 개원이 천황위 계승 후 약 1년 뒤에 이루어진 데 반해, 메이지 천황의 경우에는 에도 막부 멸망과 신정부 수립, 무진전쟁 등 혼란한 정국으로 인하여 1년 반이 넘게 지연되었다. 그리하여 1868년 8월 27일에 즉위례를 거행한 뒤, 천황의 도쿄 행차를 앞둔 9월 8일에 메이지로의 개원 및 일세일원제를 조서로 선포했다.

(전략) 짐이 비록 부덕하나 다행히도 조종의 신령에 기대어 삼가 대업을 계승하여 만기(萬機)를 친정하니, 이에 개원하여 천하의 백성과 함께 고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한다. 무릇 게이오 4년을 고쳐 메이지 원년으로 하고 지금부터 옛 제도를 고쳐 일세일원으로 하여 영원한 법식으로 삼으니, 책임자는 이를 시행하라.⁹

7 所功, 『元号の歴史 増補版』, 253~254쪽.

8 宮内庁 編, 『明治天皇紀 第1』, 宮内庁, 1968, 471쪽(1867년 2월 16일조).

9 宮内庁 編, 『明治天皇紀 第1』, 827쪽(1868년 9월 8일조).

또한 이와 동시에 그해 4월에 정체서(政體書)에 의해 설치된 행정관[行政官, 태정관(太政官) 내 행정 담당 부서] 명의로 개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포고가 내려졌다.

이번에 즉위 대례를 마치시고 선례대로 연호를 고치셨다. 이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길흥의 징조에 따라 자주 연호를 고쳤지만, 지금부터는 일대일호(一代一號)로 정했다. 이에 따라 게이오 4년을 고쳐 메이지 원년으로 한다는 분부가 내려졌다.¹⁰

이처럼 갓 성립한 메이지 신정부는 천황의 조서와 행정관 포고를 통해, 상서와 재이에 따른 기존의 개원 관행을 부정하고 “영원한 법식”으로서 일세일원제를 국내에 선언한 것이다. 더 나아가 대외적으로도 일본 주재 각국 공사에게 개원 및 일세일원제 도입을 통고했다.¹¹ 후술하다시피, 이때의 행정관 포고는 연호와 관련된 각종 황실 법령이 1945년의 패전 후 폐지된 뒤 연호의 유일한 법적 근거로 상당 기간 동안 간주되었다.

한편 이때는 일세일원제의 도입 외에 개원 절차에서도 새로운 측면이 엿보인다. 우선 스가와라씨 출신의 유학자가 복수의 후보를 상신(감신)하는 것까지는 기존과 동일했지만, 이에 대한 공경회의에서의 심의(난진)는 폐지되었다. 그 대신 신정부가 신설한 관직인 의정(議定) 마쓰다이라 요시나가(松平慶永)가 그중 두세 개의 후보를 추린 뒤 천황이 몸소 선택할 것을 상주했다. 다음으로 천황 본인이 삼종 신기(三種神器) 중 거울을 모시는 궁중 내가시코도코로[賢所, 나이시도코로(内侍所)]에서 추첨하여 ‘메이지’를 연호로 선택했다. 마지막으로 개원 조서에 조정의 참의(參議) 이상 공경이 서명한 것 외에, 신정부의 보상(輔相)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 이하 의정, 참여(參與), 행정관 등 각 관(官) 관리들이 서명한 두 종류의 복주(覆奏) 문서가 작성되

10 「太政官日誌 第81」, 『太政官日誌 慶應4年 第17-18卷』(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 아카이브, 최종 검색일: 2023. 12. 3.), 1쪽.

11 所功, 『元号の歴史 増補版』, 177쪽.

었다.¹²

이처럼 개원 및 그 절차상의 새로운 관행 도입을 주도한 것은 이와쿠라 도모미였다. 즉 “난진과 같이 한가한 논의를 주고받는 의식은 번문욕례(繁文縟禮)의 폐단이므로 주로 그 개정을 주장하고, 또 일세일원제로 할 것을 건의”하여 의정·참여의 동의를 얻은 뒤 천황에게 상주하여 재가받았다는 것이다.¹³ 이때 그가 일세일원제 도입을 주장한 배경으로는 앞서 말한 것처럼 후지타 유코쿠 등의 주장과 함께, 당시 서양 군주 국가에서 ‘…왕 통치 …년’식의 기년법이 서기(西紀)와 함께 사용된 것이 그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¹⁴

다만 근대의 개막은 기존의 연호에 의한 기년법이나 천황 사후 시호 결정에 대한 이론(異論)이 제기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쓰다 마미치(津田真道)는 1869년에 “세계 만국과 교제하는 때”라는 점을 이유로, 서구 각국이 서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일본도 연호를 폐지하고 진무 천황(神武天皇) 즉위년을 원년으로 하는 황기(皇紀)로 통일할 것을 건의했다.¹⁵ 또한 좌원(左院)의 이토(伊藤) 소의생(少議生)이라는 인물도 1872년 8월에 열린 건의에서 “오늘날 외국과의 교제가 날로 열려 상호가 왕래하고 문명이 진보하는 때”에 “중국의 낡은 관습”인 시호를 폐지하고, 생전부터 사후까지 통일하여 사용할 ‘…천황’이라는 호칭을 영원히 정할 것을 건의했다.¹⁶

그리고 이와쿠라가 도입한 근대 연호에 관한 새로운 관행의 제도화를 주도한 것은 바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이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는

12 宮内庁 編, 『明治天皇紀 第1』, 827쪽(1868년 9월 8일조). 다만 여기에는 연호 후보를 상정한 주체가 “기요하라(清原)·스가와라(菅原) 양 가문의 당상”[清菅兩家の堂上]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는 잘못이고, 실제로 ‘메이지’를 연호 후보로 올린 것은 스가와라씨의 지류(支流) 출신인 가라하시 아리테루(唐橋在光)였다고 한다(所功, 『元号の歴史 増補版』, 202쪽).

13 所功, 『元号の歴史 増補版』, 176쪽.

14 国分航士, 「近代の元号」, 『歴史と地理』 731号, 2020, 2쪽.

15 国分航士, 「近代の元号」, 3쪽.

16 『謚号ヲ廢スルノ議(伊藤少議生)』(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 Ref.A07061528800, 『記録材料·建白書 仮綴』, 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野村朋弘, 『謚: 天皇の呼び名』는 ‘이토 소의생’을 이토 히로부미로 추정하지만(179쪽), 당시 이토는 공부대보(工部大輔)였고 또 이와쿠라 사절단의 부사(副使)로서 구미 출장 중이었기에 이는 잘못으로 보인다.

1881년의 ‘메이지 14년 정변’ 후 유럽으로 건너가 각국의 헌법 및 입헌제의 운영 실태를 시찰하고 귀국했다. 그리하여 1884년에는 제도취조국(制度取調局)을 설치하고 스스로 장관으로 취임하여 각종 개혁을 준비했고 이는 화족령(華族令) 제정, 내각 제도 도입 등으로 이어졌다. 또한 1886년부터는 이른바 ‘대일본제국헌법’(大日本帝國憲法) 및 이와 한 쌍을 이룰 황실전범(皇室典範)의 기초(起草) 작업에 착수했다.

그중 천황위 계승 후 개원 및 일세일원제의 제도화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되었다. 즉 1887년 1월에 상훈국(賞勳局) 총재 야나기와라 사키미쓰(柳原前光)가 기초한 「황실전범 초고」에는 “즉위 후 원호를 정하는 것은 고토쿠 천황 이래의 예에 따른다. 단 일세 동안 다시 고치지 않는 것은 메이지 원년의 정제(定制)에 따른다.”(제16조)라고 되어 있었다. 이는 그해 3월에 이토 등과 다카나와(高輪) 회의를 거쳐 “즉위”가 ‘천조’로 수정됨과 동시에 조문 번호가 제13조로 변경되었고, 또 “천조·즉위·개원은 조서로 공포한다.”가 제14조로 추가되었다.

다만 이토가 천황에게 상주한 뒤 1888년 5월에 추밀원(樞密院)에 교부된 황실전범 원안 단계에서 제14조는 삭제되었고, 제13조도 “고토쿠 천황 이래” 운운의 내용이 삭제되었다.¹⁷ 한편 추밀원에서는 조문 번호를 제12조로 고친 것 외에는 별다른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1889년 2월 11일에 대일본제국헌법과 함께 제정된 황실전범의 해당 조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 천조 후 원호를 정하고 일세 동안 다시 고치지 않는 것은 메이지 원년

17 国分航士, 「近代の元号」, 4쪽. 이에 대해 所功, 『元号の歴史 増補版』은 황실전범에는 일세일원의 원칙만 명기하면 되고, 또 “고토쿠 천황 이래의 예에 따른다.”라고 할 경우 상서나 제이 등에 따른 개원도 포함된다고 여겨질 수 있으므로 일세일원의 원칙과 부합하지 않기에 삭제된 것으로 추정한다(186쪽). 실제로 이토는 『皇室典範義解』(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 Ref.A04017235400, 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제12조에 대한 설명에서 고토쿠 천황의 다이카 연호 선포를 “연호 제정의 시초이자 역대의 예제(例制)”가 되었다고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 후 음양(陰陽)·점복의 설에 따라 일세 동안 자주 연호를 고쳐서 헛되이 사서(史書)의 번거로움을 이루기에 이르렀다.”라고 비판했다(14쪽).

의 정제에 따른다.

하지만 연호 사용 기간의 종점을 천황의 육체적 죽음으로 하는 생전퇴위 금지를 둘러싸고는 이토와 그 밖의 인물들 간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야나기와라가 다카나와 회의에 제출한 「황실전범 재고(再稿)」에는 “천황은 종신 대위(大位)를 맡는다. 단 정신 또는 신체에 불치의 중환이 있을 때는 원로원에 자순(諮詢)하여 황위 계승 순서에 따라 양위할 수 있다.”(제12조)라고 되어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이노우에 고와시(井上毅)도 일본 역사상 양위의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찬성했다. 하지만 이토는 양자에게 동의하지 않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본안은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렵다. 천황이 종신 대위를 맡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일단 천조하신 이상에는 마음대로 그 지위를 벗어나실 도리가 없다. 애초에 계승의 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니, 정신 또는 신체에 불치의 중환이 있어도 여전히 그 군주를 황위에서 물러나게 하지 않고 섭정을 두어 온갖 정사를 섭행(攝行)하지 않는가. 예전에 양위의 예가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교의 폐단에서 유래한 것이다. 나는 참으로 천자는 범모(犯冒)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자는 지위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이노우에는 “지존이라고 해도 사람이므로 그가 원하지 않을 때는 언제라도 그 지위에서 물러날 수 있다.”라고 반론했지만, 이토는 해당 조문은 무용하다면서 삭제할 것을 강경하게 주장했다.¹⁸ 그 결과 황실전범에서 황위 계승은 오로지 선제의 사망을 계기로 이루어진다고 했고, 이에 대해 『황실전범의해』(皇室典範義解)는 양위 금지는 진무 천황 이래 초기의 법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정당화했다.

18 坂本一登, 『伊藤博文と明治国家形成: 「宮中」の制度化と立憲制の導入』, 講談社, 2012(초판은 吉川弘文館, 1991), 248~249쪽.

제10조 천황이 붕어(崩御)할 때는 황사(皇嗣)는 즉시 천조하고 조종의 신기(神器)를 잇는다.

진무 천황부터 조메이 천황(舒明天皇)에 이르기까지 34대에 일찍이 양위한 일이 없었다. 양위의 예가 고교쿠 천황(皇極天皇)에서 시작된 것은 생각건대 여제(女帝)의 가섭(假攝)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략) 쇼무 천황(聖武天皇), 고닌 천황(光仁天皇)에 이르러 마침내 정례를 이루었다. 그 후 권신의 협박으로 인해 양통호립(兩統互立)을 상례로 하는 일이 있기에 이르렀고, 남북조의 동란도 여기에서 기인했다. 본 조에서 천조는 선제가 붕어한 뒤 즉시 행하는 것으로 정한 것은 상대(上代)의 항전(恒典)에 따르고 중고(中古) 이래 양위의 관례를 고치는 것이다.¹⁹

이미 이토가 주도한 제도취조국의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1886년 1월에 작성된 「황실제규」(皇室制規)에는, 유럽법에 따라 ‘제위(帝位)는 종신’이라는 사고방식이 드러나 있었다고 한다.²⁰ 또한 이토는 황실을 정치에서 분리하여 ‘자립’시킴과 동시에 천황의 개인적 요소를 가능한 한 배제함으로써 ‘궁중’을 제도화할 것을 일관되게 추구했다. 따라서 군주의 자유의사의 산물이자 군주가 대신에 대항하기 위한 최후의 무기이기도 한 생전퇴위는 철저히 부정되어야 한 것이다.²¹

한편 1899년에는 황실 제도 정비를 위해 이토를 총재로 하는 제실제도 조사국(皇室制度調査局)이 설치되었고, 1903년부터 부총재 이토 미요지(伊東巳代治)의 주도하에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1907년에 동 조사국이 폐지될 때까지 작성하여 상주한 황실 관련 법령은 총 51건에 달했다.²²

그중 연호와 시호 공표 형식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1907년에 제정된 공식령(公式令)이다. 법률 제정 형식과 공포 방식 등을 정한 기존의 공문

19 『皇室典範義解』, 10~12쪽.

20 西川誠, 「皇室典範の制定: 明治の皇位継承」, 歴史学研究会 編, 『天皇はいかに受け継がれたか: 天皇の身体と皇位継承』, 積文堂出版, 2019, 158쪽, 164쪽.

21 坂本一登, 『伊藤博文と明治国家形成: 「宮中」の制度化と立憲制の導入』, 249쪽.

22 西川誠, 『天皇の歴史 7巻: 明治天皇の大日本帝国』, 講談社, 2011, 311~313쪽.

식(公文式)을 대체한 이 법령은 제1조에서 “황실 대사(大事)” 및 “대권 시행”에 관한 칙지(勅旨)를 선포할 때는 조서로 해야 하고, 그중 전자는 궁내대신과 수상이, 후자는 수상 혹은 기타 국무대신이 함께 부서(副署)한다고 규정했다.²³

다음으로 황실전범 제정 과정에서 생략된 개원 시기, 절차, 공포 방식을 규정한 것은 바로 등극령(登極令)이다. 1905년 단계에서 작성된 초안에 따르면 “천황이 즉위례를 행했을 때는 연호를 개원”(제20조)하고 연호는 “별도로 정한 방식에 따라 가시코도코로 어전(御前)에서 이를 선정”(제21조)하며 개원 후 내각총리대신(수상)이 이를 공포한다(제22조)고 되어 있었다.²⁴ 기본적으로 앞서 살펴본 메이지 개원의 선례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초안은 제실제도조사국 내 심의를 거쳐 많은 수정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개원 시기는 황실전범 제12조 규정에 맞추어 즉위가 아닌 천조를 기준으로 하고, 또 과거 공경회의에서의 심의(난진)를 의식하여 새 연호는 추밀원예의 자순을 거쳐 정하는 것으로 했다.²⁵ 그리하여 천황예의 상주, 궁내대신의 내각 조회, 추밀원 자순 등을 거쳐 1909년 2월에 제정·공포된 등극령의 개원 관련 조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천황이 천조한 뒤에는 즉시 원호를 고친다. 원호는 추밀고문에게 자순한 뒤 이를 칙정한다.

제3조 원호는 조서로 이를 공포한다.²⁶

또한 제실제도조사국은 시호의 제도화도 시도했다. 동 조사국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황실상의령(皇室喪儀令) 초안에 따르면 “천황의 붕어는 국가의 대사”이므로 수상이 즉시 이를 공고한다고 했다(제1조). 특히 추호 봉고

23 『官報』, 1907년 2월 1일, 1면 1단(칙령 제6호).

24 「登極令草案」, 伊藤博文 編, 金子堅太郎 等 校訂, 『秘書類纂 雜纂2』, 秘書類纂刊行会, 1936, 193쪽.

25 国分航士, 「近代の元号」, 5~7쪽.

26 『官報』, 1909년 2월 11일, 호외 1면 1단(황실령 제1호).

(奉告) 및 공포 관련 조문에 관한 주석에는 향후 시호 결정 기준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2조 천황이 붕어할 때는 추호를 올린다. 그 추호는 내각총리대신이 이를 공고한다.

삼가 살펴건대, 천황의 칭호는 이를 역사에 비추건대 시호가 있고 추호가 있다. 시호에는 일본식 호칭[和稱]이 있고 중국식 호칭[漢稱]이 있다. 추호에는 궁의 명칭으로써 삼는 것이 있고 능의 명칭으로써 삼는 것이 있으며 또 별도로 의의가 있는 것이 있다. 이제 이를 총칭하여 단지 추호라고 한다. 황실전범의 일세일원제에 따라 원호로써 이에 충당해도 무방할 것이다.²⁷

즉 이 초안에서는 천황 사후의 호칭을 ‘추호’로 통일함과 동시에, 기존의 일반적인 관행과는 달리 황실전범에 새롭게 규정된 일세일원제에 따라 생전에 사용한 연호를 추호로 사용하는 길을 열고자 한 것이다.

실제로 1906년 6월에 이토 히로부미가 천황에게 상주한 황실상의령에 서는 천황이 사망할 경우 수상과 궁내대신이 연서(連署)하여 이를 공고하고(제1조), 전 천황의 시호도 같은 방식으로 공고한다고 했다(제3조). 특히 제1조의 주석에서 “천황 붕어의 공고를 특별히 내각총리대신·궁내대신의 연서에 의한다고 한 것은 황실 및 국가의 대사인 데서 유래한다.”라고 한 것에 서는, 앞서 살펴본 초안 단계에서의 인식과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천황 등이 사망할 경우 시호를 칙정한다는 제2조의 주석에서는 초안과는 달리 연호를 시호로 사용할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다.²⁸ 또한 황실상의령은 1912년에 천황이 사망할 때까지 끝내 재가받지 못한 채 그대로 보류되었다.²⁹

27 「皇室喪儀令」, 伊藤博文 編, 金子堅太郎 等 校訂, 『秘書類纂 雜纂3』, 秘書類纂刊行會, 1936, 2쪽.

28 「機密 喪議第壹号 皇室喪儀令案定本 伊藤帝室制度調査局總裁上奏」(일본 궁내공문서관 소장, 식별번호 94193).

29 당시 제실제도조사국이 작성한 법령 51건 중 메이지 천황이 사망할 때까지 재가받지 못한 것은 18건

이처럼 근대 이후 일세일원제, 연호 심의 절차 간소화, 천황위 계승 후 개원, 생전퇴위 금지 등 연호와 관련된 새로운 관행이 등장했다. 이는 이전부터 일부 학자들이 제기한 일세일원제론과 함께 서양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새로운 관행 도입은 이와쿠라 도모미가, 그 제도화는 이토 히로부미가 주도했다. 그리하여 근대 연호 제도는 메이지 개원으로부터 44년, 황실전범 제정으로부터 20년 만에 등극령 제정으로 비로소 완비되었고, 연호로 표상되는 시간은 천황의 황위 계승에서 시작하여 육체적 죽음으로 끝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다만 천황과 그가 재위한 시간을 후세가 기억하기 위한 장치인 시호는 아직 제도화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3. 근대의 개원 및 시호 결정과 국민들의 반응

1912년 7월 29일 밤, 메이지 천황이 사망했다. 다만 천황위 계승 등의 준비를 위해 다음 날인 7월 30일에 사망한 것으로 발표되었고, 실제로 그날 황태자 요시히토 친왕(嘉仁親王, 훗날의 다이쇼 천황)이 신 천황이 되었다. 이처럼 메이지 천황은 즉위 후 정한 연호를 바꾸지 않고 사망할 때까지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선언한 일세일원제를 몸소 실행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계기로 근대 일본 최초의 개원 및 시호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고조되었다.

메이지에서 다이쇼로의 개원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월 28일에서 29일에 걸쳐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수상은 가쿠슈인(學習院) 교수, 궁내성 도서조(圖書助), 내대신 비서관장, 내각서기관장실 사무 촉탁에게 새 연호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제출된 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재제출을 요구했다. 그리하여 7월 30일에 신 천황이 계승 직후에

이었다. 그 이유는 천황이 신중하게 심의했을 뿐만 아니라, 황실상의령의 경우에는 '내 장례식을 결정하는 것인가'라며 재가를 주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西川誠, 『天皇の歴史 7巻: 明治天皇の大日本帝国』, 313쪽).

개원 조서안 및 연호안을 추밀원에 자순하자, 사이온지 수상은 3개의 연호 후보를 추밀원 측에 송부했다. 특히 가능한 한 1안인 ‘다이쇼’를 채택하고자 한다는 천황의 뜻이 시종직 어용괘(御用掛)를 통해 전달되었다.³⁰ 이에 따라 추밀원에서 추밀고문관, 국무대신 등이 ‘다이쇼’로 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상주하자 천황은 이를 칙정했고, 수상 이하 각 국무대신이 부서한 다음과 같은 개원 조서가 관보로 공포됨으로써 개원 절차는 마무리되었다.³¹

짐의 부덕함으로 대통을 이어 조종의 영(靈)에 고하고 만기의 정치를 행한다. 이에 선제가 정하신 제도에 따라 메이지 45년 7월 30일 이후를 고쳐서 다이쇼 원년으로 삼는다. 책임자는 이를 시행하라.³²

이처럼 근대 최초의 개원은 “선제가 정하신 제도”, 즉 황실전범 및 등극령 규정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또한 수상 이하 각 국무대신이 부서한 조서의 형식으로 공포되었다는 점에서, 개원은 공식령에 규정된 “대권 시행” 사항으로 간주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개원 절차는 이미 제도화되었고 또 천황의 사망 발표와 신 천황의 황위 계승 및 연호 선포가 같은 날에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연호 선정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그 만큼 적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고 천황 사망 후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결정되는 시호의 경우는 어떠했는지 검토해겠다.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위하면서 일본을 ‘일등국’이자 제국으로 탈바꿈한 천황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상실감이 점차 가라앉고 장례 준비, 그의 시대에 대한 회고, 그를 기리기 위한 방법(신궁, 동상, 박물관 등 건립)을 둘러싼 논쟁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점차 국민들의 관심은 신 천황이 선황에게 올릴, 그리고 앞으로 국민들이 그를 기억하고 부르게 될 이름인 시호로 향했

30 国分航士, 『近代の元号』, 8쪽.

31 所功, 『元号の歴史 増補版』, 188~189쪽.

32 『官報』, 1912년 7월 30일, 호외 1면 1단.

다. 그리고 그들은 단지 시호 결정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적극적으로 그 과정에 참여하고자 했다.

천황이 사망한 지 보름 정도 지난 1912년 8월 19일에 『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은 “국민들은 한결같이 가장 적당한 시호가 하루라도 빨리 발표될 것을 희망한 나머지 여러 가지를 자신들이 좋아하는 신문사 등에 보내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은 ‘신문 따위로 미적지근하다’라고 보았는지 궁내성을 향해 각자의 의견을 써서 보내는 것이 매일 적지 않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모 대상사(大喪使) 사무관은 “궁내성에서는 이 건백서를 일괄하여 평의원의 곁에 보관하여 참고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발언하여,³³ 당국도 국민들의 의향을 존중하고 이를 시호 결정에 반영할 듯한 자세를 보였다. 또한 기사란이나 독자 투고란에도 자신이 희망하는 시호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글이 종종 실렸는데, 그중에는 이미 ‘메이지’를 시호로 할 것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다.³⁴

또한 추호 봉고식(奉告式) 전날인 8월 26일에 『도쿄니치니치신문』(東京日日新聞)은 천황의 추호가 ‘진쇼’(神照)로 내정되었다는 설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진쇼’는 진무 천황의 국어 시호인 ‘간야마토이와레히코히히데노미스메라미코토’(神日本磐余彦火火出見天皇)의 ‘진’(神)과 간무 천황(桓武天皇)의 국어 시호인 ‘아마토네코스베이야테라스노미코토’(日本根子皇統彌照尊)의 ‘쇼’(照) 두 글자를 택한 것이라면서, 거의 이 ‘진쇼’로 내정하신 것처럼 전하는 자가 있다. 또한 민간에게 대상사에 대해 봉정한 추호도 100여 통에 달하므로, 이것들도 일단 대상사에서 전형한 뒤 금상 폐하에게 상주하여 칙재(勅裁)를 청하기로 되었으므로 (후략)³⁵

33 「御謚号に就き建白」, 『東京朝日新聞』, 1912년 8월 19일, 조간 5면 2단.

34 「先帝御追号考」(모 문학 박사 답화), 『東京朝日新聞』, 1912년 8월 15일, 조간 4면 3단; 「思いつきつぎ」(一臣民 투고), 『東京朝日新聞』, 1912년 8월 17일, 조간 5면 8단.

35 「御追号は廿七日御発表」, 『東京日日新聞』 1912년 8월 26일, 3면 1단. 다만 동 기사에서 마타노 다쿠(股野琢) 내대신 비서관장은 ‘진쇼’ 내정설을 부인하고 있다. 참고로 진무 천황의 국풍 시호는 ‘가마야마토이와레히코호히데미노스메라미코토’, 간무 천황은 ‘아마토네코미스마루이요테라스노미코

이 기사에서 말하는 ‘진쇼’가 당국에서 고안한 것인지 민간에서 제시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³⁶ 만약 후자라면 당시 국민들은 현 천황가의 시조로 여겨지는 진무 천황, 그리고 헤이안(平安) 시대를 연 간무 천황과 동렬의 존재로 근대 최초의 천황을 기억하고자 한 것이 된다. 또한 이 기사를 통해 민간에서 ‘에이메이’(叡明), ‘고부’(光武), ‘고레쓰’(光烈), ‘다이민’(大明) 등 100여 통의 시호안이 제출되는 등, 국민들은 자신이 살아온 시대를 기억하기 위해 그때 재위한 천황의 시호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들의 의향과는 무관하게, 8월 21일에 궁내대신 겸 대상사 부총재인 와타나베 지아키(渡邊千秋)는 도쿠다이지 사네쓰네(德大寺實則) 시종장에게 전 천황의 시호는 ‘메이지’로 칭하기로 했다고 통지했다.³⁷ 또한 그달 25일보다 이른 시기에 와타나베는 자신의 정치적 후원자인 겐로(元老)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에게, 아리스가와노미야 친왕(有栖川宮親王)이 시호를 천황에게 상신하여 마침내 결정되었고 27일에 봉고식이 열릴 것이라고 보고했다.³⁸ 그리하여 8월 27일에 선황의 관(棺)이 모셔진 궁중 내빈궁(嬪宮)에서 추호 봉고식이 열렸고, 신 천황이 직접 ‘메이지’를 추호로 올렸다. 이때 봉고문(奉告文)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삼가 황고(皇考)의 영 앞에 아뢰입니다.

토'이지만 여기서는 기사 원문대로 표기했다.

- 36 野村朋弘, 『諡: 天皇の呼び名』에 따르면, 선대 천황의 한풍 시호에서 한 글자씩 따서 새로운 시호로 정한 사례는 3건 존재한다(78쪽). 하지만 국풍 시호에서 한 글자씩 따는 것은 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3대 전인 고카쿠 천황 이래 중국 고전을 참조한 한풍 시호가 부활했다. 따라서 근대 최초의 천황으로서 상당한 업적을 남긴 메이지 천황에 대해 당국에서 기존의 국풍 시호를 조합하는 방식을 택했을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
- 37 「侍從長德大寺實則日記 自明治18年3月至大正3年5月/10」(일본 궁내공문서관 소장, 식별 번호 35990, 1912년 8월 21일조).
- 38 1912년 8월 25일부 와타나베 지아키 앞 야마가타 아리토모 서한, 尚友俱樂部·長井純市 編, 『渡辺千秋関係文書』, 山川出版社, 1994, 278쪽. 한편 8월 10일에 겐로 마쓰카타 마사요시(松方正義)는 와타나베를 방문하여 전 천황의 시호로 ‘신’(神)과 ‘덕’(德)의 두 글자를 제안했다(1912년 8월 10일부 야마가타 아리토모 앞 와타나베 지아키 서한, 尚友俱樂部山縣有朋関係文書編纂委員会 編, 『山縣有朋関係文書 3』, 山川出版社, 2008, 382쪽).

황고의 덕업(德業)이 넓고 커서 이를 표창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45년간의 창대함을 흠모하여 ‘메이지 천황’이라고 추칭(追稱)합니다. 삼가 이에 봉고합니다.³⁹

이에 관하여 『메이지천황기』(明治天皇紀)는 예로부터 연호를 시호로 택하는 것은 일본과 중국에 선례가 없지만 “선제의 45년간의 대업을 표창하기에 족할 적합한 글자를 얻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선제 치세의 원호는 가장 성스러운 업적을 상징하는 데 가깝”기에 메이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⁴⁰ 즉 메이지는 생전에 사용한 연호라는 점에서는 추호임과 동시에, 선황이 일생에 걸쳐 해당 연호를 사용한 기간 중에 이룩한 업적을 현창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는 시호의 성격도 아울러 띤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연호와는 달리 시호는 그 결정 시기, 절차는 물론 공포 방식도 제도화되지 않았다. 다만 관보에서 시호 결정은 ‘공포’가 아닌 ‘고시’의 형식으로 발표되었고, 또 궁내대신과 수상만 여기에 부서했다.⁴¹ 앞서 본 황실상의령 상주안에 천황의 사망을 “황실 및 국가의 대사”로 간주하고 시호 결정 후 ‘수상과 궁내대신’이 공고한다고 되어 있던 점을 고려하고, 또 이번 부서 및 공포 방식을 공식령 제1조 조문에 비추어 보면, 시호는 연호와는 달리 ‘국가의 일’이라기보다는 ‘황실의 일’로 간주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천황 생전의 연호를 시호로 결정한 것에 관하여 당국은 어떠한 논리로 국민들에게 이를 설명하고 정당화했는가. 첫 번째는 일세일원제와의 연관성이다. 모 궁내성 관계자는 기자의 취재에 대해 “연호를 곧바로 추호로 삼은 것은 일본과 중국 모두에 예가 없지만, 선제 폐하는 일세일원제를 단행하셨으므로 금상 폐하에 의해 원호를 추호로 삼는 신례(新例)를 여신다면 매우 시기적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했다.⁴² 이는 앞서

39 宮内庁 編, 『明治天皇紀 第12』, 宮内庁, 1975, 832~833쪽(1912년 8월 27일조).

40 宮内庁 編, 『明治天皇紀 第12』, 833쪽(1912년 8월 27일조).

41 『官報』, 1912년 8월 27일, 호외 1면 1단.

42 『「明治天皇」と御決定』, 『東京朝日新聞』, 1912년 8월 27일, 조간 5면 1단.

본 황실상의령 초안에서 일세일원제의 연장선상에서 연호를 시호로 사용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일치하는 논리다.

두 번째는 기억의 용이성이다. 당시 개원 및 시호 결정 과정에 참여한 마타노 다쿠(股野琢) 내대신 비서관장은 “‘메이지’라고 하면 곧바로 선제 일대의 성대한 업적을 연상하도록 하는 힘이 있다. 즉 45년간 원호였던 관계에서 그 글자의 의의 이상의 내용을 즉시 알도록 하는 힘이 있는 것이다.”라고 기자에게 설명했다.⁴³ 또한 ‘호시노(星野) 박사’도 메이지를 시호로 택한 것은 “천황 치세의 치적을 후세가 기억하는 데 간편함을 취지로 한 점에서 말하자면 가장 적절하다.”라고 높게 평가했다.⁴⁴ 즉 일세일원제에 따라 장기간 사용된 연호를 천황의 시호로 사용하여 국민들에게 그의 치세와 그가 남긴 업적을 떠올리도록 함으로써, 연호로 표상되는 시간은 천황의 육체적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시호를 통해 ‘그 연호를 사용한 천황이 재위한 시대’로 후세에까지 기억되기에 이른 것이다.

다만 국민들 중에는 시호에 관한 새로운 관행의 출현에 당황하는 이도 존재했다.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시호 결정을 통해 전 천황의 호칭이 ‘메이지 천황’이 된 결과, 당시 지명, 상호명, 상품명 등에 널리 쓰이던 ‘메이지’라는 표현을 피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시호 발표 다음 날에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은 ‘모 당국자’의 다음과 같은 설명을 게재했다.

존명(尊名)을 피휘(避諱)하여 세간에 널리 사용되는 ‘메이지야’(明治屋)라든지 ‘메이지 무슨 무슨 회사’라든지 하는 듯한 명칭을 고쳐야 하는가 하는 설도 있겠지만, 이는 각자의 의사에 맡길 일이고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제한도 없다. 종래에도 천황의 존칭을 그대로 성명·지명 등에 쓰는 것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이

43 「御確定までの経過」, 『東京朝日新聞』, 1912년 8월 28일, 조간 2면 4단. 또한 『도쿄니치니치신문』은 마타노가 메이지를 시호로 건의한 인물이라고 추측하고 있다(『明治』の御追号を建白せる, 『東京朝日新聞』, 1912년 8월 28일, 조간 7면 1단).

44 「御追号の緣由」, 『東京朝日新聞』, 1912년 8월 27일, 조간 2면 4단. 메이지·다이쇼 시대의 한학자이자 역사가인 호시노 히사시(星野恒)로 추정된다.

치조(一條), 니조(二條), 산조(三條), 다이고(醍醐), 오기마치(正親町), 하나조노(花園), 무라카미(村上) 등이 이러하다. 따라서 이에 관해서는 특별히 문제 삼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⁴⁵

하지만 같은 날에 ‘세키네(關根) 문학 박사’는 이와는 정반대로 “이미 이렇게 결정된 오늘날에는 신하 측에서 삼가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 일본식 버선[足袋] 등의 상품에는 ‘메이지’라는 말을 쓰지 말 것을 조언했다. 특히 “이 원호를 추호로 하신 것이 훗날의 예(例)가 된다면 ‘다이쇼’라는 글자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삼가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한 것은 주목된다.⁴⁶ 이처럼 새로운 시호 관행의 출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당혹감은 당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해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각 신문사는 일제히 시호 결정을 환영함과 동시에 시호와 국민과의 관계를 논하는 사설을 발표했다. 우선 『도쿄니치니치신문』은 “추호가 결정될 때까지 세간에 약간의 사의(私議)가 있었던 것에 대해 혹은 이를 불경하다고 하는 자가 있지만, 이는 오히려 심히 생각이 부족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필경 신자(臣子)의 지극한 정성과 선제를 추모하는 성의에서 비롯된 것임에 다름 아닐 뿐이다.”라고 하여, 시호 결정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인 높은 참여 열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⁴⁷ 또한 『도쿄아사히신문』은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던 메이지를 시호로 결정한 것을 문제 삼고 앞으로는 피휘할 것을 주장하는 “수구당의 어리석은 의견”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어리석은 무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름은 말할 것도 없고 황제의 추호까지 민간에서 사용하는 것은 그 존엄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어리석은 설을 주창했다. 이는 어디까지나 황실을 민중과 격리하여 자신이 독점하고자 하는 환관적

45 「御追号を諱み奉る可きか」, 『読売新聞』, 1912년 8월 28일, 조간 3면 1단.

46 「御追号明治天皇」, 『読売新聞』, 1912년 8월 28일, 조간 5면 1단. 메이지~쇼와(昭和) 시대의 국문학자인 세키네 마사나오(関根正直)로 추정된다.

47 「御追号仰出さる」, 『東京日日新聞』, 1912년 8월 28일, 조간 1면 1단.

편견의 발현이고, 우리가 힘껏 배격해야 하는 것이다.

무릇 일국의 황제는 인민과 친해야 하는 것이지 결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할 것이 아니다. 특히 우리 일본의 국체는 위로는 주상과 아래로는 5,000만 민중이 부자(父子)의 정이 있기에 존중되는 것이다. (중략) 역대 천황의 시호 등은 5,000만 신민이 혹은 이를 성으로 쓰고 혹은 이를 이름으로 써도 누구도 수상하게 여기는 자가 없다. (중략)

바야흐로 영명하신 신 천황 폐하는 우선 선제의 추호에서 수구적인 어리석은 의견을 배척하시고 단호히 국민의 황제라는 실증을 명시하셨다.⁴⁸

이 사설의 논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휘는 일본 고유의 문화가 아닌 전근대 중국의 봉건적인 유습이고 신해혁명 이후에는 중국에서도 행해지지 않고 있다. 둘째, ‘문명국’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예로부터 군주의 이름이나 시호를 인명·지명 등으로 사용했고 이를 통해 군민(君民) 간의 친밀함과 군주에 대한 경의를 표해 왔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사이에 널리 정착한 메이지를 시호로 사용하는 데 반대하는 것은 황실을 국민으로부터 분리하여 독점하려는 “중국식 정치가”의 “환관적 편견”으로 비난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신 천황 즉위를 계기로 황실과 국민을 직결하고 그 중간에 있는 “군측(君側)의 간(姦)”을 비판하는 논리가 등장한 것은, 그로부터 불과 몇 달 뒤에 발생할 다이쇼 정변(大正政變)을 예감케 한다.

한편 1916년에 이토 미요지를 총재로 하는 제실제도심의회(帝室制度審議會)가 설치되면서 메이지 천황의 사망으로 재가받지 못한 채 남아 있던 황실 관련 법령의 정비 작업이 재개되었다. 동 심의회의 활동은 1918년에 영친왕(英親王)과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 여왕(梨本宮方子女王)의 결혼에 관한 황실전범 증보(增補) 문제를 둘러싸고 이토가 사표를 제출하는 등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1924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본격화되었다.⁴⁹ 그 결과 천황이

48 「帝号忌避の愚論」, 『東京朝日新聞』, 1912년 9월 3일, 조간 3면 1단.

49 西川誠, 「大正後期皇室制度整備と宮内省」, 『年報・近代日本研究』 20号, 1998, 90~95쪽.

사망하기 직전인 1926년 말까지 미해결된 황실 관련 법령들이 차례차례 제정·공포되었는데, 그중에는 황실상의령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해 10월에 제정된 황실상의령의 시호 관련 조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천황, 태황태후, 황태후, 황후가 붕어했을 때는 추호를 칙정한다.

제3조 대행천황(大行天皇)의 추호는 궁내대신, 내각총리대신의 연서로 이를 공고한다.⁵⁰

이처럼 위 조문에는 시호를 올리는 대상, 결정 주체, 공포 방식이 규정되어 있다. 그 구성은 이미 제정된 등극령의 개원 관련 조문과 유사하고, 또 내용에서 볼 때 메이지 시호 결정 및 공포 방식을 그대로 제도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앞서 살펴본 이토 히로부미 상주안과 비교하면 부서의 주체로 궁내대신을 수상보다 앞에 두고 있고, 또 제1조의 주석에서 천황의 사망을 “황실 및 국가의 대사”라고 한 부분도 삭제되었다.⁵¹ 또한 연호와 는 달리 추밀원의 자순을 거치지 않고 궁내대신과 수상만 부서하며 조서로 공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공고한다고만 규정되었다는 점에서, 시호는 ‘국가의 일’이 아닌 ‘황실의 일’이라는 인식이 비로소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이쇼 천황은 육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하여 요양에 전념하던 중 1926년 12월 25일에 결국 사망했고, 1921년 말부터 섭정을 맡고 있던 황태자 히로히토 친왕(裕仁親王, 훗날의 쇼와 천황)이 그날 신 천황이 되었다.

역시 다이쇼에서 쇼와로의 개원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번에는 천황 사망 전에 이치키 기토쿠로(一木喜徳郎) 궁내대신과 와카쓰키 레이지로(若槻禮次郎) 수상이 각각 궁내성 도서관(圖書寮) 편수관과 내각 관방

50 『官報』, 1926년 10월 21일, 호외 14면 1단. ‘대행천황’이란 사망 후 아직 시호가 추증되기 전까지의 천황의 호칭이다.

51 「皇室喪儀令(儀註整理案, 大正9年12月21日主査会可決)」(일본 궁내공문서관 소장, 식별 번호 90902) 등에 따르면, 1920년 12월에 열린 제실제도심의회 주사회(主事會) 단계에서 주석의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총무과 사무 촉탁에게 연호안 제출을 명했다. 그 과정에서 이치키는 마키노 노부아키(牧野伸顯) 내대신 및 겐로(元老) 사이온지 긴모치의 의견을 구했고, 이치키와 와카쓰키 수상 간의 협의도 이루어졌다. 그 결과 쌍방에서 마련한 연호안을 수상이 재차 조사하여 ‘쇼와’(昭和)를 후보로 선정한 뒤 2개의 참고안과 함께 추밀원에 송부했다.

그 후 신 천황의 추밀원 자순에서 조서를 통한 공포까지의 절차는 다이쇼 개원 당시와 동일하다.⁵² 또한 이때의 개원 조서는 그 내용에서도, 또 개원 이유를 천황 이래 “정해진 제도”에서 찾는다는 점에서도 지난번과 거의 같다.

짐은 황조(皇祖)·황종(皇宗)의 위령(威靈)에 기대어 대통을 이어 만기를 총괄한다. 이에 정해진 제도에 따라 원호를 정하여 다이쇼 15년 12월 25일 이후를 고쳐서 쇼와 원년으로 삼는다.⁵³

한편 신문 보도에서는 메이지 천황 때와 같이 시호 결정에 국민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열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 추호 봉고식을 1주일 앞둔 1927년 1월 12일에 『도쿄아사히신문』은 궁내성과 내각 측이 별도로 시호 후보를 고안하고 궁내대신과 수상이 협의하여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보도한 뒤, 전 천황의 시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소문을 전하고 있다.

추호는 현재로서는 일원일호설(一元一號說)이 가장 유력하다고 하므로 대행천황에 대해서도 그러한 의미에서 추호를 올리게 될 것이라 한다.⁵⁴

즉 메이지 천황은 즉위 후 정한 연호를 사망할 때까지 사용함으로써 스

52 所功, 『元号の歴史 増補版』, 189~191쪽.

53 『官報』, 1926년 12월 25일, 호외 1면 1단.

54 「御追号と御陵名 近日中に裁可」, 『東京朝日新聞』, 1927년 1월 12일, 조간 1면 4단.

스로 선언한 일세일원제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사망한 후에는 그 연호가 시호로 사용됨으로써 “일원일호”의 선례가 된 것이다. 카리스마적인 존재이자 죽어서는 ‘신’으로까지 숭상받는 메이지 천황의 선례가 규정하는 힘은 그만큼 강했기에, 국민들도 이에 따라 전 천황의 시호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전과 같은 참여 열기를 보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정식으로 시호가 발표되거나 봉고식이 열리기도 전에 이미 3개의 후보 중에 ‘다이쇼 천황’이 포함되어 있다거나,⁵⁵ “메이지 천황에 의한 일원일호의 예를 답습하여 ‘다이쇼 천황’으로 결정”되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⁵⁶ 결국 봉고식 하루 전에 ‘모 궁내 고관’은 신문을 통해 일부러 다음과 같은 해명을 해야 했다.

추호 및 능명(陵名)은 칙정하시는 것이고 일반 서민들이 억측하는 것은 황송한 일이다. 특히 세간에 전해지는 것처럼 시호를 ‘다이쇼 천황’이라고 칭하고 능명을 ‘다마 능’(多摩陵)이라고 칭하는 것으로 정하셨는지는 언명할 수 있는 바가 아니지만 (중략)

최근 ‘일원일호’라는 것이 제창되고 있지만, 메이지 천황의 추호를 정하셨을 때는 어떠한 좋은 글자로도 성덕을 드러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하기에 원호를 그대로 추호로 하였고 일본과 중국 역사상 일찍이 그러한 예를 보지 못한 하나의 신례를 여신 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일원일호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이번에 칙정하신 추호가 원호 그대로일지 어떨지는 알 수 없다.⁵⁷

그리고 1927년 1월 20일에 빈궁에서 추호 봉고식이 열렸고, 병으로 불참한 신 천황을 대신하여 황족이 예상대로 ‘다이쇼’를 선황의 추호로 올렸다. 이때 봉고문의 내용과 이에 관한 『다이쇼천황실록』(大正天皇實錄)의 설명에서는 시호 결정에서 메이지천황의 선례가 얼마나 크게 작용했는지를 확

55 「大行天皇御追号 今明日中に上奏」, 『東京朝日新聞』, 1927년 1월 17일, 조간 2면 7단.

56 「御追号は『大正天皇』」, 『東京朝日新聞』, 1927년 1월 18일, 조간 2면 7단.

57 「御追号の憶測は畏れ多き極み」, 『読売新聞』, 1927년 1월 19일, 조간 7면 3단.

인할 수 있다.

히로히토가 삼가
 황고 재천(在天)의 신령에게 아뢰입니다.
 황고께서는 재위하신 것이 15년,
 메이지 현조(顯祖)를 계승하시어 곧 그 밝음[明]을 이으시고
 다이쇼의 태평 치세를 여시어 일찍부터 그 올바름[正]을 기르셨습니다. 이에
 예로부터 전해 오는 제도에 따라 추호를 올려서
 ‘다이쇼천황’이라고 칭합니다.

생각건대, 추호는 메이지천황의 선례를 모방하시어 연호를 채용하신 것이다.⁵⁸

이처럼 근대에 이루어진 두 차례의 개원과 시호 결정을 통해 연호 및 시호에 관한 제도와 관행은 비로소 완성되었다. 그중 국민들은 제도화가 상대적으로 늦고 결정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며 자신들이 살아온 시대와 그때 재위한 천황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인 시호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려는 욕구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의향과는 무관하게, 천황 생전의 연호를 시호로 사용하는 새로운 관행이 출현하고 또 제도화되었다. 그리고 천황이 일생에 걸쳐 사용하면서 업적을 남긴 시대의 연호를 그의 시호로 택한 것은 국민들에게 나름의 설득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메이지천황의 선례로서 일세일원제와 일원일호제는 결합하게 되고, 이러한 제도와 관행이 대를 이어 반복되고 누적됨으로써 시대의 상징으로서 연호 및 시호의 지위는 더욱 확고해진 것이다.

58 宮内省図書寮 編修, 岩壁義光 補訂, 『大正天皇実録 補訂版 第6』, ゆまに書房, 2021, 363~364쪽 (1927년 1월 20일조).

4. 현대 연호 및 시호에 관한 논의와 제도의 변용

지금까지 근대 천황제에서 연호 및 시호 관련 제도와 관행이 성립하고 이에 따라 실제로 개원과 시호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국민들이 받아들인 것을 통해, 천황 자신과 그의 황위 계승에서 육체적 죽음까지의 시간이 연호와 시호로 표상되고 기억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다만 연호와 시호의 이러한 지위는 천황은 종신 재위해야 하고 처음에 정한 연호를 바꾸어서는 안 되며 사망한 뒤에는 연호가 그의 호칭인 시호가 된다는, 근대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전통과 이를 떠받치는 각종 법령에 의해 유지된 것이다. 따라서 이는 패전과 점령, 민주화와 상징천황제,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생전퇴위 및 상황 호칭 부활 등을 계기로 동요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마지막으로 현대의 정치적 격변이 연호와 시호에 초래한 위기, 전후의 새로운 제도를 둘러싸고 국민 참여 문제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논의와 이를 통한 제도와 관행의 변용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전전과 전후의 단절성과 연속성을 검토하겠다.

우선 1945년의 패전은 생전퇴위 금지 및 일세일원제 유지에 위기를 초래했다. 쇼와 천황이 1945년 9월에 연합국 최고 사령관 맥아더(Douglas MacArthur)를 방문하고 이듬해 1월에 ‘인간 선언’을 하며 맥아더 측이 제시한 비무장 및 전쟁 포기를 일본정부가 수용함으로써, 천황제가 폐지되거나 천황이 전범으로 기소될 위기는 회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쟁이 국민에게 초래한 피해 등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에서 퇴위해야 한다는 주장은 천황 본인을 비롯하여 황족, 천황 측근 등으로부터 종종 제기되었다.⁵⁹

또한 제국의회에서는 패전을 계기로 연호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1945년 12월에 스즈키 쇼고(鈴木正吾) 중의원 의원은

59 加藤陽子, 『天皇の歴史 8巻: 昭和天皇と戦争の世紀』, 講談社, 2011은 쇼와 천황 퇴위론의 중대한 고비로서 1948년 11월에 A급 전범의 교수형 판결이 내려진 날과 1952년 5월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발효 기념식이 열린 날을 들고 있다(373~374쪽). 다만 천황의 퇴위는 전쟁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되지는 않았다.

시데하라 기주로(幣原喜重郎) 수상에게 “이번 미증유의 국난에 직면하여 인심을 일신하여 일종의 정신적 혁명을 성취한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연호를 고칠 의사는 없는가.”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국사(國史)를 펼치면 국가의 경사 또는 흥사시에 연호를 고친 사실은 일일이 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메이지 이래 ‘한 명의 천황은 한 개의 연호’가 되었지만, 이번 패전은 국사 미증유의 국가의 대흥사입니다. 어떠한 의미에서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일본은 이미 고대사에 속한다고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본인이 바야흐로 새롭게 기원 1년부터 일어서는 것이라는 정도의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일본은 도저히 재건하고 부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쇼와 연호를 고쳐서 인심을 일신할 궁리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⁶⁰

즉 그는 일본인 중에는 패전의 심각성을 통감하지 못하는 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에 대한 일종의 ‘충격 요법’으로서 “국가의 대흥사”인 패전을 계기로 개원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여기서는 메이지 천황 이래의 일세 일원제 원칙이 수정되고 근대 이전의 상서·재이에 따른 개원 부활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전전과의 단절성이 엿보인다.

또한 1946년 7월에는 다나카 이사지(田中伊三次) 중의원 의원 등이 헌법 개정안에 관하여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수상에게 질문 주의서를 제출했다. 여기서 그는 현행 대일본제국헌법에서 일본국헌법(日本國憲法)으로 개정될 경우 국체(國體)는 변혁되는 것이 아닌가, 또 헌법 개정에 따라 국호를 ‘대일본제국’에서 ‘일본국’으로 고칠 의사는 없는가 등을 확인한 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했다.

60 「第89回帝國議會 衆議院 予算委員會 第3号」(일본 제국의회 회의록 검색 시스템, 1945년 12월 4일). 이에 대해 시데하라 수상은 연호는 황실전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셋째, 원호를 개정할 의도는 있는가.

등극령 제2조는 “천황이 천조한 뒤에는 즉시 원호를 고친다.”라고 규정하여 원호 개정은 천황의 천조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정부는 이 규정과 무관하게 개정 헌법 공포일부터 ‘쇼와’ 연호를 고침으로써 영구히 전쟁을 포기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일본 국민의 염원에 걸맞은 신 원호를 제정할 의사는 없는가.

그리고 신 원호 제정에 관해서는 이를 널리 국민 일반에 공모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신 원호의 민주적 개정을 할 의사는 없는가.⁶¹

이처럼 그는 종래의 황실전범 및 등극령에 규정된 일세일원제와 천황위 계승 후 개원 원칙을 수정하고, 신 헌법 공포일에 맞추어 전쟁 포기 및 평화주의에 걸맞은 새 연호로 고칠 것을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새 연호를 국민으로부터 공모함으로써 “민주적 개정”을 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다음으로 패전과 점령은 연호와 시호의 근거 법령을 소멸시켰다. 구 황실전범 개정 과정에서 상징천황제에 따라 국무(國務)적 사항은 신 전범에서 제외한다고 결정되었기에, 1947년 5월에 개정된 황실전범에 연호 관련 조문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내각은 1946년 11월에 구 황실전범 제12조를 대신하는 원호법(元號法)안을 마련했지만,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HQ)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했다. 또한 등극령과 황실상의령을 비롯한 각종 황실령도 1947년 5월에 일본국헌법이 실시되면서 일괄 폐지되었다. 그 결과 정부는 처음에는 메이지 개원 및 일세일원제를 선포한 1868년의 행정관 포고를, 나중에는 ‘사실인 관습’을 쇼와 연호 사용의 근거로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연호 사용의 법적 근거가 소멸한 것은 연호 폐지론이 제기되는

61 「第90回帝国議会 衆議院 本會議 第19号」(일본 제국의회 회의록 검색 시스템, 1946년 7월 23일). 다만 요시다 수상은 일세일원제 원칙을 지금 당장 수정할 적극적인 이유가 없고 현행 ‘쇼와’ 연호는 『서경』(書經) 「요전」(堯典)의 “백성소명(百姓昭明), 협화만방(協和萬邦)”에서 유래한 것이므로 평화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면 이를 일축했다.

계기가 되었다. 신 헌법이 실시되고 머잖아 강화 회의가 개최되어 일본의 국제 사회 복귀가 예상되던 1950년 2월에, 참의원(參議院) 문부위원회의 다나카 고타로(田中耕太郎) 위원장은 ‘원호에 관한 조사의 건’ 및 ‘조사 승인 요구의 건’을 부의했다. 여기서 그는 “신 헌법 제정 후 ‘원호’에 관한 법적 기초가 불명확해졌고 또 신 헌법 정신에서 보더라도 일세일원제가 과연 타당한지 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생겼으며, 또 강화 회의를 앞두고 장래에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의 일원이 될 입장에서 이번엔 각 문명국 공통의 연호 계산에 따르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견지”에서 연호에 관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⁶² 이처럼 그는 연호 폐지 및 서기로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참고인 의견 청취 및 질의 등을 활발하게 진행했지만, 얼마 뒤 참의원 의원을 사직하고 최고재판소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조사는 흐지부지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1968년의 메이지 100년 기념 식전, 1976년의 천황 재위 50년 식전 등을 계기로 연호 법제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즉 신사본청(神社本廳)과 각지의 청년 등이 정부, 국회, 지방 의회를 대상으로 서명·청원 등을 통해 압력을 가하는 ‘아래로부터의 대중 운동’을 전개한 것이다.⁶³ 그 결과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내각은 1979년 2월에 원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둘러싸고 연호는 일본 고유의 전통이자 문화로서 국민들 사이에 정착했고 대다수의 국민이 그 존속을 원하며 헌법상의 상징 천황제와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정부 및 보수·중도 정당(자민당, 공명당, 민사당, 신자유클럽), 연호는 세계 보편적인 제도가 아니고 과거의 절대주의적 천황제의 산물이며 헌법상의 국민 주권에 반한다는 진보 정당(일본사회당, 일본공산당) 간의 격론을 거쳐 6월에 제정되었다.⁶⁴

원호법은 다음과 같은 극히 간단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62 「第7回国会 参議院 文部委員会 第6号」(일본 국회 회의록 검색 시스템, 1950년 2월 21일).

63 国分航士, 「近代の元号」, 10쪽.

64 所功, 『元号の歴史 増補版』, 239~246쪽.

1. 원호는 정령(政令)으로 정한다.
2. 원호는 황위 계승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친다.⁶⁵

동법은 내용 구성상 전전의 등극령의 개원 관련 조문을 부활시킨 것에 해당한다. 비록 황실령이 아닌 국회의 심의를 거친 법률의 형식이라는 점과 천황의 칙정이 아닌 내각의 정령(政令)으로 연호를 정한다는 점에서는 전전과의 단절성이 보이지만, 천황위 계승이 있는 경우에만 개원한다는 점에서는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후자가 천황 사망 후 천황위 계승을 규정한 신 황실전법 제4조와 결합함으로써 전전의 종신 재위 및 일세일원제가 비로소 완전히 부활했다. 한편 부칙에서 현행 연호는 이 법에 근거하여 정해진 것으로 간주한다고 함으로써, 메이지 개원으로부터 40년이 넘어서야 근대 연호 제도가 완비된 것처럼 패전 후 30년 이상이 지나서야 쇼와 연호 사용의 법적 근거 공백 사태가 간신히 해결되었다.

그런데 원호법안에 대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민 참여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주장이 발견되는 것은 주목된다. 우선 신자유클럽에 소속된 나가와 히데나오(中川秀直) 중의원 의원은 1979년 4월에 내각위원회에서 원호법 제정에 찬성하면서도, 앞으로의 연호는 “천황 원호나 내각 원호가 아닌 국민 원호”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열린 국회 심의를 통해 원호는 법제화하는 편이 낫”다고 하면서 “국민에게 친숙하고 사랑받으며 열린 원호”를 선정할 방법으로 “공모라든지 혹은 국회의 어느 정도의 공청회”의 가능성을 언급했다.⁶⁶ 한편 일본사회당에 소속된 무라타 히데조(村田秀三) 참의원 의원은 그해 5월에 내각위원회에서 원호법 제정에 반대하면서 “주권재민, 그 국민이 요구하는 것을 연호로 정하고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물론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천황과는 무관하게 국민이 추구하는 ‘복지’ 등의 목표를 연호로 정해야 하고, 현재의 법안은 개원에 관하여 내각에

65 e-Gov法令検索, 「元号法」(1979년 6월 12일 공포, 법률 제43호),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54AC0000000043> (최종 검색일: 2024. 1. 1.).

66 「第87回国会 衆議院 内閣委員会 第7号」(일본 국회 회의록 검색 시스템, 1979년 4월 17일).

백지 위임하기에 반대한다고 주장한 것이다.⁶⁷

하지만 연호 선정 과정에 일반 국민이나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 길은 결국 마련되지 않았다. 원호법 제정에 따라 1979년 10월에 각의 보고되고 1984년과 1989년에 개정된 ‘원호 선정 절차에 관하여’에 따르면, 우선 수상이 높은 학식이 있는 자를 고안자(考案者)로 선정하여 연호안 고안을 위촉한다. 이들이 제출한 안을 내각 관방장관이 조사하여 복수의 후보를 선정한다. 이에 관하여 문화·학문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유식자(有識者)들로 구성된 ‘원호에 관한 간담회’와 중의원 및 참의원 의장·부의장의 의견을 구한다. 그리하여 전 각료 회의와 임시 각의에서 신 연호 및 개원 정령을 결정하면 천황이 이를 공포하는 것이다. 이처럼 각계의 유식자 및 국민의 대표로서 양원 의장·부의장의 의견을 듣는 것 외에는 내각 주도로 개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상징천황의 국사 행위(國事行爲)로서 천황이 개원 정령에 서명 날인하고 공포한다는 점에서 고대 이래 줄곧 이어진 ‘천황 칙정’의 형식이 일부 남아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⁶⁸

한편 전전에는 천황의 연호가 곧 그의 시호가 되었기에, 원호법안을 둘러싼 논의에서는 시호도 당연히 문제가 되었다. 국회에서는 원호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로부터 현 천황이 사망한 뒤에는 ‘쇼와’가 그의 시호가 되는지에 대해 정부 측의 확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집요하게 이어졌다. 이는 일본공산당에 소속된 야마나카 이쿠코(山中郁子) 참의원 의원의 발언처럼 훗날 천황의 이름(시호)이 될 연호로 연도를 표기하는 것이 상징천황제에 부합하는지, 또 그것이 국민들에게 연호 사용을 강제하게 되지는 않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황위 계승에 의해 원호를 바꾸고 국민을 구속한다, 이 구속에 관해서는 논의가 또 나올 것이니 강제의 문제 부분에서 하겠습니까만, 구속하거나 혹은 천황의

67 「第87回国会 参議院 内閣委員会 第9号」(일본 국회 회의록 검색 시스템, 1979년 5월 24일).

68 所功, 『元号の歴史 増補版』, 257쪽.

이름을 붙인다, 이것은 추호 부분에서 이미 말해 왔습니다만 이것도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므로, 천황의 이름을 붙인 연월일을 쓰도록 하는 것, 이것은 상징의 기능을 역시 크게 넘어서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⁶⁹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원호법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논의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전전에도 연호와 시호 관련 제도는 별개였고 천황이 생전에 사용한 연호를 사후 그대로 시호로 사용하는 제도는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현 천황이 사망한 뒤 시호 결정은 황실 내부의 문제로서 정부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비록 전전의 황실상의령에 해당하는 법령은 오늘날까지도 제정되지 않았지만, 시호 결정은 “황실, 즉 내정(內廷)의 사무”⁷⁰라는 정부 측 발언에서 연호는 ‘국가의 일’이고 시호는 ‘황실의 일’이라는 전전의 인식과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1989년에는 전후 최초의 천황 교대에 따른 개원 및 시호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해 1월 7일 오전에 쇼와 천황이 사망하자 곧바로 황태자 아키히토 친왕(明仁親王, 현 상황)이 신 천황이 되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원호 선정 절차’에 따라 3개의 연호 후보 중에서 헤이세이(平成)가 선정되었고, 천황의 조서가 아닌 내각의 정령과 내각 관방장관의 TV 기자 회견을 통해 그날 오후에 신 연호가 발표되었다.

한편 1월 31일에 빈궁에서 열린 추호 봉고식에서는 전전과 마찬가지로 선허이 사용한 연호인 ‘쇼와’를 신 천황이 추호로 올렸다. 이때 추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키히토가 삼가 아버지 대행천황의 영에게 아뢰니다.

대행천황께서는 즉위에 즈음하여 국민의 안녕과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시어 ‘쇼

69 「第87回国会 参議院 内閣委員会 第12号」(일본 국회 회의록 검색 시스템, 1979년 5월 29일). 국회 회의록에 기록된 의원의 발언을 속기한 것으로, 원문의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 최대한 직역했다.

70 「第87回国会 衆議院 内閣委員会 第5号」(일본 국회 회의록 검색 시스템, 1979년 4월 11일)에서 사나다 히데오(真田秀夫) 내각 법제국장관의 답변.

로서 상황이 국민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정착한 것이라는 점, 상징이나 권위의 이중성을 회피한다는 관점에서 현행 헌법하에서 상징이었던 분을 표현하는 새로운 칭호”로서 상황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향후 생전퇴위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권의 최고 기관인 국회가 특례법 제정을 통해 그때마다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퇴위의 옳고 그름에 관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입각하여 판단”함으로써, 과거의 상황·법황(法皇)에 의한 폐해나 천황의 강제 퇴위 혹은 자의적인 퇴위 등을 막을 수 있다는 국회 측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⁷³ 즉 정부 측은 이는 어디까지나 천황의 종신 재위와 상징천황이라는 근현대 천황제의 새로운 원칙하에서 인정된 예외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내세운 것이다.

이처럼 패전과 점령, 민주화는 연호와 시호의 법적 근거를 소멸시키고 천황 퇴위론, 개원론, 연호 폐지론, 연호 국민 공모론 등이 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원호법을 제정하여 연호 선정 과정에서 국민이나 국회가 아닌 내각의 주도성을 규정함과 동시에 전전의 종신 재위 및 일세일원제를 부활시켰다. 한편 시호 관련 제도는 끝내 마련되지 않았지만, 시호 결정은 ‘황실의 일’이라고 하여 국회 측의 관여를 배제했다. 그리고 전후 최초의 천황 교대에 따른 개원 및 시호 결정에서는 전전의 일세일원제와 일원일호제를 재확인했고, 약 200년 만에 부활한 천황의 생전퇴위 및 상황 호칭도 예외적인 조치로 간주했다. 즉 패전과 민주화라는 큰 고비를 맞이하면서도 일본의 천황제가 상징천황제로 변신하여 생존한 것처럼, 이에 수반된 제도이자 일본에서 시대를 구분하고 기억하는 상징인 연호와 시호도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선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다.

73 「第193回国会 衆議院 議院運営委員会 第31号」(일본 국회 회의록 검색 시스템, 2017년 6월 1일).

5. 맺음말

본고는 일본에서 시대를 구분하고 기억하는 상징으로서 근현대 천황제에 수반된 연호와 시호에 주목하여 이와 관련된 제도와 관행의 성립 과정, 새로운 전통이 출현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과 참여 욕구, 패전과 민주화가 연호와 시호에 초래한 위기와 국민 참여 문제를 포함하는 논의를 거쳐 새로운 제도로 변용하여 오늘날까지 생존하는 과정을 고찰했다.

근대 최초의 천황인 메이지 천황의 즉위 및 개원 이후 일세일원제, 연호심의 절차 간소화, 천황위 계승 후 개원, 생전퇴위 금지, 생전 연호의 시호 사용 등 연호와 시호에 관한 새로운 관행이 차례로 등장했다. 하지만 이것이 황실전범, 등극령, 황실상의령 제정을 통해 제도화되는 데는 메이지 개원 이후 60년 가까운 시일이 소요되었다. 한편 국민들은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고 결정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시호 결정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자 했고, 또 시호에 관한 새로운 관행의 출현에 당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을 ‘일등국’이자 제국으로 만든 메이지 천황이 일생 동안 사용한 연호를 시호로 택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이를 수용했고, 그 결과 일세일원제와 일원일호제가 결합하고 이후에도 반복되었다. 그리고 패전과 민주화로 연호와 시호의 법적 근거가 소멸하고 연호 폐지론이나 국민 공모론 등이 등장하자, 정부는 원호법이라는 새로운 근거를 부여하여 내각 주도의 연호 선정을 규정하고 종신 재위 및 일세일원제를 부활시켰으며, 또 시호 문제에서도 국회 측의 관여를 배제했다. 그리고 전후 최초의 천황 교대에서는 전전의 일세일원제와 일원일호제를 재확인했고, 최근에 있었던 천황의 생전퇴위 및 상황 호칭 부활도 예외적인 조치로 간주한 것이다.

일찍이 천황이 정치적 권한을 거의 지니지 못했던 에도 시대의 유학자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는 “우리나라는 오늘날 천자의 호령이 천하에 행해지는 것은 단지 연호 한 가지뿐”이라고 했다.⁷⁴ 오늘날의 상징천황제하

74 所功, 『元号の歴史 増補版』, 180쪽.

에서 200년 만에 상황 칭호가 부활했지만, 훗날 현 상황이 사망할 경우 그의 시호는 ‘헤이세이 천황’이 될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할 만큼 근현대 연호와 시호 제도는 일본 국민들 사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황실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친근감과 긴밀함을 느낀다고 응답하는 가운데, 천황제가 존속하는 한 이에 수반된 연호와 시호가 폐지될 가능성은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시대의 상징으로서 연호와 시호 사용은 역으로 천황제의 생존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편집자의 말

헤이세이의 천황제는 무엇이였을까 | 박삼헌

박진우, 「편집자의 말: 천황·자유·질서」, 『일본비평』 제9호, 2013.

스즈키 마사유키, 류교열 옮김, 『근대 일본의 천황제』, 이산, 1998.

시라이 사토시, 한승동 옮김, 『국체론: 천황제 속에 담긴 일본의 허구』, 메디치, 2020.

「平成から令和へ 喜びのカウントダウン 0時に誓いのキス」, 「新元号と一緒にスタート うれしい」,
『朝日新聞』, 2019. 5. 1.

특집 | 헤이세이(平成) 30년, '상징'천황제의 생존 전략을 묻는다

시대의 상징으로서 근현대 일본의 연호와 시호 | 박완

1. 사료

『官報』

『東京朝日新聞』

『東京日日新聞』

『読売新聞』

『記録材料・建白書仮綴』(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皇室典範義解』(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太政官日誌 慶応4年 第17-18巻』(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 아카이브)

「機密 喪議第壹号 皇室喪儀令案定本 伊藤帝室制度調査局総裁上奏」(일본 궁내공문서관 소장)

「皇室喪儀令(儀註整理案, 大正9年12月21日主査会可決)」(일본 궁내공문서관 소장)

「侍從長徳大寺實則日記 自明治18年3月至大正3年5月/10」(일본 궁내공문서관 소장)

「第89回帝国議會 衆議院 予算委員会 第3号」(일본 제국의회 회의록 검색 시스템)

「第90回帝国議會 衆議院 本会議 第19号」(일본 제국의회 회의록 검색 시스템)

「第7回国會 參議院 文部委員会 第6号」(일본 국회 회의록 검색 시스템)

「第87回国會 衆議院 内閣委員会 第5号」(일본 국회 회의록 검색 시스템)

「第87回国會 衆議院 内閣委員会 第7号」(일본 국회 회의록 검색 시스템)

「第87回国會 參議院 内閣委員会 第9号」(일본 국회 회의록 검색 시스템)

「第87回国會 參議院 内閣委員会 第12号」(일본 국회 회의록 검색 시스템)

「第193回国会 衆議院 議院運営委員会 第31号」(일본 국회 회의록 검색 시스템)

e-Gov法令検索(<https://elaws.e-gov.go.jp>)

伊藤博文 編, 金子堅太郎 等 校訂, 『秘書類纂 雑纂2』, 秘書類纂刊行会, 1936.

伊藤博文 編, 金子堅太郎 等 校訂, 『秘書類纂 雑纂3』, 秘書類纂刊行会, 1936.

宮内庁 編, 『明治天皇紀 第1』, 宮内庁, 1968.

宮内庁 編, 『明治天皇紀 第12』, 宮内庁, 1975.

宮内省図書寮 編修, 岩壁義光 補訂, 『大正天皇実録 補訂版 第6』, ゆまに書房, 2021.

宮内庁, 『昭和天皇実録 第18』, 東京書籍, 2018.

尚友倶楽部・長井純市 編, 『渡辺千秋関係文書』, 山川出版社, 1994.

尚友倶楽部山縣有朋関係文書編纂委員会 編, 『山縣有朋関係文書 3』, 山川出版社, 2008.

2. 연구

스즈키 마사유키, 류교열 옮김, 『근대 일본의 천황제』, 이산, 1998.

加藤陽子, 『天皇の歴史 8巻: 昭和天皇と戦争の世紀』, 講談社, 2011.

國分航士, 「近代の元号」, 『歴史と地理』 731号, 2020.

坂本一登, 『伊藤博文と明治国家形成: 「宮中」의 制度化と立憲制의 導入』, 講談社, 2012, 초판은 吉川弘文館, 1991.

鈴木洋仁, 『「元号」と戦後日本』, 青土社, 2017.

鈴木洋仁, 「『天皇=元号=時代』의 崩壊 時代語る意味問い直しを」, 『Journalism』 347号, 2019.

所功, 『元号の歴史 増補版』, 雄山閣出版, 1993.

所功 編著, 『日本年号史大事典〔普及版〕』, 雄山閣, 2017.

西川誠, 「大正後期皇室制度整備と宮内省」, 『年報・近代日本研究』 20号, 1998.

西川誠, 『天皇の歴史 7巻: 明治天皇の大日本帝国』, 講談社, 2011.

西川誠, 「皇室典範の制定: 明治の皇位継承」, 歴史学研究会 編, 『天皇はいかに受け継がれたか: 天皇の身体と皇位継承』, 積文堂出版, 2019.

野村朋弘, 『諡: 天皇の呼び名』, 中央公論新社, 2019.

오코토바를 통해 다시 묻는 '상징'의 의미: 헤이세이 시대 천황의 이중성 | 김태진

가사하라 히데히코, 유지아 옮김, 『상징 천황제와 황위 계승』, 경인문화사, 2020.

김범수 외, 『근대 일본의 번역과 정치: 대의정체 개념의 수용과 변용』,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김승배, 「권력이 아닌 권위의 침투: 상징 천황에 관한 고찰」, 『문화와 정치』 Vol. 8 No. 2, 2021.

김태진, 「우주 대생명의 표현으로서 신도론: 가케이 가쓰히코 신도론의 지성사적 의미」, 『일본비평』 28호, 2023.

비에이라, 모니카 브리투·데이비드 런시먼, 노시내 옮김, 『대표: 역사, 논리, 정치』, 후머니타스, 2020.

시라이 사토시, 한승동 옮김, 『국체론』, 메디치, 2020.

오쓰카 에이지, 선정우 옮김, 『감정화하는 사회』, 리시울, 2020.

요나하 준, 이충원 옮김, 『헤이세이시 1989~2019: 어제의 세계, 모든 것』, 마르코폴로, 2022.

유지아, 「전후 상징천황제의 정착 과정에 나타난 천황대권의 모호성」, 『일본공간』 11, 2012.

특집 | 헤이세이(平成) 30년, '상징'천황제의 생존 전략을 묻는다

시대의 상징으로서 근현대 일본의 연호와 시호 | 박완

본고는 일본에서 시대를 구분하고 기억하는 상징으로서 근현대 천황제에 수반된 연호와 시호에 주목하여 이와 관련된 제도와 관행의 성립 과정, 새로운 전통이 출현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과 참여 욕구, 폐전과 민주화가 연호와 시호에 초래한 위기와 국민 참여 문제를 포함하는 논의를 거쳐 새로운 제도로 변용하여 오늘날까지 생존하는 과정을 고찰했다.

근대 최초의 천황인 메이지 천황의 즉위 및 개원 이후 일세일원제, 연호 심의 절차 간소화, 천황 위 계승 후 개원, 생전 퇴위 금지 등 연호에 관한 새로운 관행이 차례로 등장했다. 그리고 이는 이토 히로부미의 주도하에 40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황실전범 및 등극령 제정으로 제도화되었다. 다만 황실상의령은 메이지 천황의 생전에는 끝내 재가되지 못하면서 시호는 제도화되는 데 이르지 못했다.

다음으로 국민들은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고 결정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시호 결정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자 했다. 또한 천황이 생전에 사용한 연호를 시호로 사용하는 새로운 관행의 출현에 당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을 '일등국'이자 제국으로 만든 메이지 천황이 일생 동안 사용한 연호를 시호로 택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이를 수용했다. 그 결과 일세일원제와 일원일호제가 결합하고 천황이 교대될 때마다 반복되었으며, 또 황실상의령이 제정되면서 시호도 제도화되었다.

한편 폐전과 점령, 민주화를 계기로 황실전범, 등극령, 황실상의령이 개정·폐지되고 연호 폐지론이나 국민 공모론 등이 등장하면서 연호와 시호는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는 원호법이라는 새로운 법적 근거를 부여하여 내각 주도의 연호 선정을 규정하고 종신 재위 및 일세일원제를 부활시켰으며, 또 시호 문제에서도 국회 측의 관여를 배제했다. 그리고 전후 최초의 천황 교대에서는 전전의 일세일원제와 일원일호제를 재확인했고, 최근에 있었던 천황의 생전퇴위 및 상황 호칭 부활도 예외적인 조치로 간주했다. 이처럼 시대의 상징으로서 연호와 시호의 지위는 전전과 전후를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이것이 역으로 천황제의 생존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주제어: 연호, 시호, 일세일원제, 일원일호제, 황실전범, 등극령, 황실상의령, 원호법, 메이지 천황, 이토 히로부미

오코토바를 통해 다시 묻는 '상징'의 의미: 헤이세이 시대 천황의 이중성 | 김태진

본 연구는 천황 아키히토의 오코토바를 문학적·사상사적·정치적 텍스트로서 다루고자 한다. 2016년 「상징으로서의 직무에 대한 천황 폐하의 말씀」은 천황 자신이 상징으로서의 직무를 스스로 규정하는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상징이란 개념 자체가 애초부터 애매한, 혹은 정치적으로는 다양한 함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전후 헌법에서 '상징'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THIRTY YEARS OF HEISEI, ASKING THE SURVIVAL STRATEGY OF THE 'SYMBOL' EMPEROR

Era Names and Posthumous Titles in Modern and Contemporary Japan as Symbols of the Times | PARK Wan

This paper focuses on era names (年號) and posthumous titles (諡號) associated with the modern and contemporary emperor system as symbols for distinguishing and remembering the eras in Japan. For this purpose, the article examines the process of establishing related systems and practices, the public's reaction to the emergence of new traditions and their desires for participation, the crisis of the era names and posthumous titles caused by the defeat in the war and democratization, and the process of transforming into a new system through discussions including those on the issue of public participation and surviving to this day.

After the ascension and reign of Emperor Meiji, the first emperor in modern Japan, new practices regarding era names and posthumous titles emerged one after another, such as the "one-era-one-name system" (一世一元制), the streamlining of era name reviewing process, the prohibition of abdication during the emperor's lifetime, and the use of the era name as the posthumous title after his death. However, it took nearly 60 years since the opening of the Meiji era for these practices to be institutionalized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Imperial House Law (皇室典範), Ascension Ordinance (登極令), and Imperial House Funeral Ordinance (皇室喪儀令).

Meanwhile, people were interested in and eager to participate in the posthumous title decision process, which had not yet been institutionalized and had enough time until the decision. And they were also flustered by the emergence of new practices regarding the title. However, they finally came to embrace it because the era name used by Emperor Meiji, who had turned Japan into the first-class world power and empire, was selected as his posthumous title. As a result, the one-era-one-name system and the "one-name-one-title system" (一元一號制) were combined and repeated thereafter.

However, the defeat in 1945 and democratization removed the legal basis for era names and posthumous titles, and discussions such as those on abolishing era names or deciding them upon the public's ideas emerged. In response, the government granted a new basis called Era Name Act (元號法), stipulating the cabinet-led selection of the era name, and revived the

lifelong reign and the one-era-one-name system.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the National Diet's involvement in the issue of posthumous titles was excluded. When the first succession to the throne after the war occurred, the prewar systems of one-era-one-name and one-name-one-title were reaffirmed. And the recent revival of abdication before the emperor's death and the title of emperor emeritus were also regarded as exceptional events. In this way, the status of era names and posthumous titles as symbols of the times continues throughout prewar and postwar periods and to this day, which in turn contributes to the survival of Japanese emperor system.

• **Keywords:** Era Name, Posthumous Title, One-Era-One-Name System, One-Name-One-Title System, Imperial House Law, Ascension Ordinance, Imperial House Funeral Ordinance, Era Name Act, Emperor Meiji, Ito Hirobumi

The Meaning of 'Symbols' Revisited through Okotoba: The Duality of Emperors in the Heisei Period | KIM Taejin

This study aims to deal with Emperor Akihito's Okotoba as a literary, ideological, and political text. "Message from His Majesty: The Emperor (August 8, 2016)" is a text where the Emperor himself defines the role of the emperor as the symbol of the state. Here, it is worth recalling that the concept of a symbol itself is an ambiguous and politically charged term from the beginning. In this vein, under the symbolic emperor system in postwar Japan, the emperor's duties cannot be regarded simply as non-political. This study focuses on the body politic through which the Emperor represents himself by analyzing Emperor Akihito's Okotoba. Through this, I reveal how the Emperor intends to represent Japan and the Japanese people. 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mperor Akihito is planning the body politic regenerated in an aging society as an institution, creating a community of affect through physicality that speaks and listens to the people, and functioning as the symbol of the state and the unity of the people through the body that prays and travels. As such, Emperor Akihito represents the duality of the past and the future, authority and power, a symbol of the Japanese state and unity of the people, and the kokutai and democracy.

• **Keywords:** Akihito, Emperor, Okotoba, Heisei, Symbol, Representation

Japanese Emperor System in the Era of Social Media: The Dynamics of Underdog Politics and Spirituality | MOTEGI Kennosuk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media representations of the Emperor and the Imperial Family in Japanese society during the 2010s, a period marked by a widespread adoption of social media.

It has been suggested that in the period preceding and following the transition from the Heisei to the Reiwa era, the Japanese government exploited the popularity of the Imperial Family, despite the Family's expression of their will to maintain a certain distance from the government. However, Emperor Akihito's speech anticipated a smooth transition to the new era,